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12. 22.〕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착오안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1,123세대) : 공공분양(749세대), 행복주택(198세대), 성남 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171세대), 가정어린이집(5세대)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198세대)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본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1.2~1.5	1.11	1.12~1.17		4.14	4.25~4.27

2. 공급 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3. 1. 2(월) 10:00 ~ 1. 5(목) 17: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1. 11(수)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1. 12(목) ~ 1. 17(화)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임대공급운영1부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23.1.17(화) 발송한 등기우편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4. 14(금)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ARS(1661-7700)	**4. 25(화) 10:00 ~ 4. 27(목) 1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 11(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1. 12 ~ 1. 17**)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apply.LH.or.k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23.1.17(화)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형	공급대상	금회 공급호수 (198호)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4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84	46.9600	19.1144	7.7319	36.8666	110.6729	6~10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지역난방	**'24.9월** (예정)
46A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16	46.9600	19.1144	7.7319	36.8666	110.6729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61	55.9800	22.7859	9.2169	43.9479	131.9307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7	55.9700	22.7818	9.2153	43.9400	131.9071			

■ 임대조건

(단위: 천원)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5%)	잔금 (95%)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4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5,000**	7,250	137,750	**616.250**	(+) 73,000	218,000	251.250
						(-) 124,000	21,000	874.580
46AS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	**145,000**	7,250	137,750	**616.250**	(+) 73,000	218,000	251.250
						(-) 124,000	21,000	874.580
55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74,680**	8,734	165,946	**742.390**	(+) 89,000	263,680	297.390
						(-) 149,000	25,680	1,052.800
55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74,680**	8,734	165,946	**742.390**	(+) 89,000	263,680	297.390
						(-) 149,000	25,680	1,052.800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74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198호 중 26호**(46AS형 1호, 55A형 25호)**는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하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형 3호(1007동 103호, 1008동 105호, 1011동 102호), 55B형 2호(1010동 101호, 1013동 104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 나머지 171호는 성남2030 재개발사업 이주민에게 향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2024년 9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합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드레스룸(46A·AS)/ 침실2-알파룸(55A·B)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형),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핸드터치식), 펜트리(시스템선반포함, 46㎡만 해당), 욕조(공용욕실), 비데(46㎡-공용욕실/55㎡-부부욕실), 전동빨래건조대,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46AS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은 본 공고문『4-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용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단,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4-1. 신청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의 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단, 2인가구는 110%, 맞벌이 2인가구는 130%)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맞벌이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계액이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공급신청 시 입력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처리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계약자가 될 1인을 뜻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4-1.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외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4-2.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4-1.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46AS)에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4-2. 입주자 선정방법 (주거약자용 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외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의왕시, 과천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함.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 참고	3인 이상	2인	1인
②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⑤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5. 신청방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무주택 및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누락, 착오신청, 허위신청으로 인하여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순위,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 중 성남시 계속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공고일(2022.12.22.) 기준 성남시에 거주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거주시작일에 주민등록표초본 상 성남시 거주시작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됨)

■ 인터넷(PC)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하단의 신혼희망타운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인터넷청약-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클릭	지구 및 주택형 선택	신청구분 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3.1.2(월) 10:00 ~ 1.5(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마이페이지'를 클릭하면 청약신청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센터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① 'LH청약센터' 어플(App)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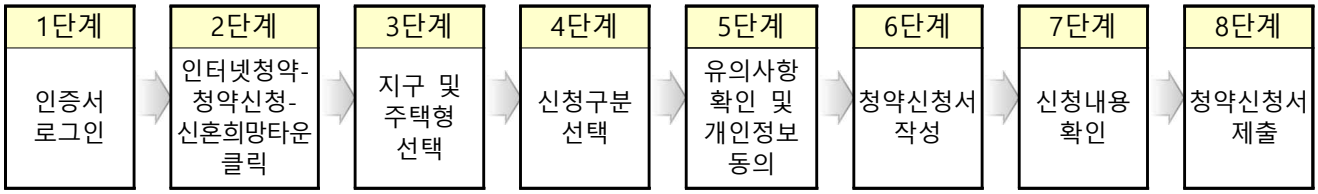
- IOS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 Google Play(구글플레이)에서 "LH청약센터" 검색 및 설치

② 모바일기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은 **'23.1.2(월) 10:00 ~ 1.5(목)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바일청약은 모바일기기(스마트폰 등)의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PC로 청약한 것을 모바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모바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 11(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서류제출기간(**1.12(목)~1.17(화)**)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23. 1. 11(수) 오후 5시)**
 - P C : LH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청약』클릭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 LH청약센터 →『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 접수불가)
 - 서류제출 기한 : **'23. 1. 12(목) ~ 1. 17(화)** * 1.17(화)에 발송한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함
 - 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 **서류제출 안내문**은 '23.1.11(수) 오후 5시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청약』→『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제출서류목록'**에 게시됩니다.

6.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에 제출**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공사 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없으면 '아니오'에 체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음**	1통 (공사 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1통씩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분리배우자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및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양식)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공급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여야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입주 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만 제출 **맞벌이 부부로 신청한 경우** →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의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3. 4. 14(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 '23. 4. 25(화) 10:00 ~ 4. 27(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계약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 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9. 유의사항

<table>
<tr><th>관련항목</th><th>유의사항</th></tr>
<tr><td>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td><td>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tr>
<tr><td>기존거주자(철거민)</td><td>20년</td></tr>
</table>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td></tr>
<tr><td>예비입주자</td><td>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대상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td></tr>
<tr><td>갱신계약 등</td><td>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able>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2년의 경우 3,55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내·외부 여건** -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서로 다르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등의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가로등,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 공공시설물의 이전 또는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가 속한 필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로서,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해 건물 준공(사용검사) 후 건물등기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대지권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사업진행 중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할 경우 기반시설이 미비할 수 있고,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북측 경계 ~ 판교원로82번길 구간 도로개설 및 두밀사거리 확장 공

사준공은 공사일정 지연 등 사유로 개통이 지연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도로 등은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보강토옹벽, 돌쌓기벽 등의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도로,레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곡부 산지 지형이 심하여 우수처리계획 시 경관녹지 내 산마루 측구를 통한 외부 유입수 처리가 어려워 산마루측구 이외에 일부 외부 유입수가 공동주택지 내로 유입되며, 공동주택용지 경계부에 임시배수로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사를 반영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음. 공동주택용지 내 외부 유입수 처리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책임은 공동주택단지에 있음
- 대지 경계부 사면 외부 유입수는 산마루 측구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계획 우수관거로 유입 후 처리될 예정이며, 산지 특성상 불가피한 계곡부(저점) 발생으로 인해 일부 외부 유입수가 공동주택지 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을 통해 지구 내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가스정압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분묘, 냄새유발시설)등 주위환경과 개발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남쪽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송전선로(345kV 신성남-동서울 T/L, #84호 철탑 ~ #85호 철탑)는 지중화되어 철거되었으며, 송전선로(도시개발구역 외부 송전선로 포함) 및 공동주택용지 남서측에 옥내형 케이블헤드(C/H), 인근 지하 심도 약 25~30m 구간에 송전선로 터널식 전력구가 영구 설치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전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밖 북측 송전선로(345kV 신안성-신성남 T/L)는 지중화 되지 않고 존치 됨.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경계 밖 송전철탑 및 고압선, 지장전주는 지중화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밖 북서측에 배수지가 설치 됨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남측 저류지 인접 공원 하부에 비점오염처리시설, 역세척수 및 정체수 처리시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가압장, 한강홍수 통제소 강우측정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상업용지 남측으로는 버스차고지가 설치될 예정임
- A11블록 진입도로변 인근 공원에 코원에너지서비스 정압기가 설치 되고, A5블록 남측 공원내 멸종위기야생생물(맹꽁이) 이주지가 조성 됨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A10블록 1006동 동측 150m 지점에 송전철탑이 위치하며, 1006동, 1007동, 1009동 북측으로 150m 지점에 고압선이 지나감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같은 동 내 혼합 배치되어 있음
- 본 단지는 경사지에 계획되어 각 동이 위치한 대지의 높이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보행진입 또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입 레벨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단차가 있어 단차구간 보도이동 시 계단을 통해 이동하거나 단지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

	동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단지 내 차량진입은 불가함 - 단지 북동측에 위치한 태봉산과의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단지 내외부에 옹벽이나 자연석 쌓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영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불가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되며,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차량 이동이 가능함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문주는 1001동과 1014동 사이 출입구에 1개소(단지별 1개소만 설치)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크기변경, 추가 설치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 - 일부 동은 1, 2층 필로티(1001동 4호라인, 1002동 1호라인, 1003동 1호라인, 1004동 1호라인, 1005동 1호라인, 1006동 1호라인, 1007동 1호라인, 1008동 3호라인, 1010동 5호라인, 1011동 3호라인, 1012동 3호라인, 1013동 5호라인) 또는 1층 필로티(1014동 2,4호라인)으로 시공되어,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09동은 피트로 진입함.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안등·가로등 및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2층~지상2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주민카페, 스마트 멀티룸, 공동육아방, 피트니스센터, 계절창고, 게스트 하우스, 관리사무소, 경비실, 택배보관소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공동육아방, 장난감놀이방 등), 어린이집, 게스트 하우스 등 부대복리시설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됨.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 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계절창고는 각 동 지하에 설치되며 온습도에 민감한 물품은 보관이 어려울 수 있음 - 계절창고는 총 세대수 미만으로 설치되어 일부 세대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어린이놀이터-2는 물줄기가 있는 촉촉놀이터로써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3호/1대, 2호/1대)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설치로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계단실에는 5개층마다 1개소의 개폐창이 설치됨 (자동폐쇄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 홀의 창은 전층마다 각 1개소의 개폐창이 설치됨 (자동폐쇄장치 설치)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003동은 지하 3층으로 계획되어 특별피난계단, 1층 방화문이 설치되며, 1호 라인 엘리베이터 홀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1002동 5호라인, 1003동 5호라인, 1011동 5호라인의 저층부는 외부계단실과 접하며, 승강기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01동 하부에는 스마트멀티룸,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주민카페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외부인 출입,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02동 하부에는 방과후교실, 공동육아방, 키즈스테이션, 경비실-2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03동과 1004동 사이 하부에는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외부인 출입,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1동과 1012동 사이 하부에는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용역원 휴게실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외부인 출입,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3동 전면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외부인 출입,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4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사회적기업이 설치되며 일부 저층세대 및 인접한 동의 경우 사용자 출입,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 차량출입통제설비를 통과한 후 설치되므로,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전기차 충전 시 대기시간이 장시간 길어질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급속충전시설 2대, 완속충전시설 66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설치위치 : 1002동 ~ 1013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중계장치)가 지하주차장, 1001동, 1003동, 1005동, 1008동, 1012동, 1014동 옥상과 지하주차장 4개소(휀룸#5, 휀룸#7, 휀룸#11, 휀룸#15)에 설치될 예정임.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11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생활자원보관소, 각 동 출입구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하주차장에 설치됨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임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됨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도, 조경공간, 녹지,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생울타리 담장 등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포장계획 등 공용부분은 각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재질, 색상,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발전기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1013동, 1014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높이는 2.7m임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문짝이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하 1,348대(지하주차장-1 245대, 지하주차장-2 230대, 지하주차장-3 138대, 지하주차장-4 350대, 지하주차장-5 385대)이며, 1,348대 중 27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함) - 1014동 인접 근린생활시설(상가) 지상주차장은 4대로 설계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에 트렌치가 설치되며 차량 통과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지하주차장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

	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일부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인접세대 내에서 보일수 있으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무인택배보관함, 스마트우편함은 통합형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코어마다 설치 - 본 단지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배출량 및 처리비용을 관리함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공동시설은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각동 옥상에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 설치로 인하여 상층부 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 : 2개소(1001, 1014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 1개소(1002동 인근)]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제습기는 지하 최하층에 한하여 설치됨) - 아파트 각동 지하1층 또는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C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휀룸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석재뿜칠로 시공됨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함 - 발코니 샤시의 개폐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 구조물과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주변(정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하며, 거실 및 각 침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되며,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가구 상하부장 후면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고 신발장 후면에는 벽도배가 시공되지 않음 - 벽/바닥타일 등은 실제 시공 및 생산과정에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트레이, 덕트,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됨 (기계,소방,전기,통신분야)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휀(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주거약자 등의 편의시설 신청 시기에 따라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피난상황 발생 시 실외기실은 하향식 피난구를 통하여 하부세대로 피난 및 직상층 세대의 피난통로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하향식 피난구는 2층 이상 세대에 홀수층과 짝수층에 교차하여 설치됨) - 하향식 피난구 적용이 불가능한 일부 3층 세대는 실외기실 루버 상단 창호를 통한 완강기가 계획되어 있음 (1001동 304호, 1002동 301호, 1003동 301호, 1004동 301호, 1005동 301호, 1006동 301호, 1007동 301호, 1008동 303호, 1010동 305호, 1011동 303호, 1012동 303호, 1013동 301호, 305호) - 하향식 피난구 적용이 불가능한 일부 2층 세대는 피난상황 발생 시 세대 현관을 통하여 피난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14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 동출입구가 피트에 위치한 1009동의 일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적용이 불가하여 피난상황 발생 시 세대 현관을 통하여 피난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09동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 발코니에 면한 창틀 밑면은 벽타일이 아닌 도장으로 시공됨 - 발코니에 결로 저감재를 시공함에 따라 부착폭 만큼 발코니의 일부 유효면적이 감소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 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며 수성페인트로 마감됨 - 실외기실은 비생활 공간으로 결로 저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수성페인트 마감 처리될 계획임. 이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함 - 각실 커튼박스 깊이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며 위치이동은 불가능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방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에도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등 중량물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경우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스배관은 가스휴즈콕크 전단까지 시공되어 플러그로 마감되며, 휴즈콕크 구매·설치 및 연소기(가스쿡탑)까지 배관 연결은 입주자 부담 사항임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됨 - 현관, 화장실,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시트마감벽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음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레인지후드에는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함
- 세탁실 상부에 전열교환기 및 자동빨래건조대가 설치되므로 세탁기 및 건조기의 2단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세탁실 문과 벽체,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전의 크기 등 규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각 세대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조닝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음
- 세대내 급탕(온수) 사용 시 메인 공급관 위치에 따라 급탕(온수)가 공급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전열교환기 및 덕트,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매립 설치(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되며, 침실2 및 알파룸에는 설치되지 않음
- 비데는 욕실(46m2㎡ 형은 공용욕실, 55m2형은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을 원할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 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양변기는 관련 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설계부하용량은 46㎡형은 4,380VA이며, 55㎡형 4,650VA임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거실, 침실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1개소에 설치됨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함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함
- 발코니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전열교환기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최상층 세대의 실외기실 조명기구와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무선랜(무선AP) 초기비밀번호는 입주 시 안내될 예정이며, 입주 후 비밀번호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세대별 AI 스피커는 제공되지 않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학교	학교명	개교시기	관할 교육청
초등학교	판교대장초등학교	개교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중학교	판교대장중학교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판교대장초등학교임
- 중학교 배정방법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의거 판교중학군 내 중학교에 배정됨
- 고등학교 배정방법은 성남시 관내 고등학교로 배정됨

10.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보관시설 설치	★★★★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세대내 일조확보율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직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진흥기업㈜ 형진건설㈜ 명산건설㈜ 에스케이임업㈜ 미래전기㈜ 주식회사 금강뉴이앤씨 인덕전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젠스 우성이엔디주식회사 ㈜이삭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한빛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케이제이엔지니어링

12.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 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침 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 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설치 시설**(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밖여닫이), 안전손잡이(현관, 좌변기, 욕조), 바닥미끄럼방지, 바닥 단차 완화(3cm),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침실), 욕실통로센서등, 높낮이조절 샤워기)**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장애인
욕 실	바닥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 이상 확대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 손잡이 설치 (L자형, -자형 각1개)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 높이(1~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 설치(물버림대)	
거 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 높이(1~1.2m))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신청 시기에 따라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5 ~ 4. 27** (단,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계약기간 마감일('23.4.2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성남판교대장 A-10 행복주택 담당자 앞"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문의처	전 화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인터넷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신청접수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별첨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선택사항 신청서**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선택사항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당첨자 성 명		2. 담청자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주거약자 성 명		6. 주거약자 생년월일	-

7.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대상	신청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거실	②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설치		□
	③ 거실조명밝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
주방	④ 좌식 싱크대	·좌식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⑤ 가스밸브 높이조정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욕실	⑥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⑦ 수건걸이 높이조정	·1.0~1.2m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
침실	⑧ 침실조명밝기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기타	⑨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 편의시설 제공대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2에 의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서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

8. 제출 서류

1)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첨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선택사항 신청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당첨자 성 명		2. 당첨자 생년월일	-
3. 주 소	(전화번호 :)		
4. 입주세대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동 호 (규모 : 전용면적 ㎡)		
5. 장애인 성 명		6. 장애인 생년월일	-
7. 구 분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② 청각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④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신청 내용	구분	항 목	시 설 내 용	대상	신청
	현관	①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①,④	☐
	욕실	②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①,④ (욕실 1개소 설치)	☐
		③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출입구 폭 80㎝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 경우 제외) ·안여닫이 → 밖여닫이		☐
		④ 좌식 샤워시설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L자형, — 자형 각1개)		☐
		⑤ 좌변기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
		⑥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미터)		☐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주방 가구	⑧ 좌식 싱크대	·휠체어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①,④	☐
		⑨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가능한 높이		☐
	거실	⑩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미터)	①,④	☐
		⑪ 시각경보기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②,④	☐
		⑫ 야간센서등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①,④	☐
	기타	⑬ 음성유도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③,④	☐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 ·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				
9. 제출 서류	1)장애인 수첩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1부. 2)주민등록 등본 1부. ※ 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